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
- 제안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47)

2. 제안이유

- 마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수변 카페의 운영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 나. 카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안 제12조)
- 다. 보험가입, 운영세칙(안 제13조~안 제14조)

라. 기금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안 제15조~안 제18조)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위원회 설치 및 임기, 기능(안 제22조~안 제2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0. 21.~11. 10.(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 조례안으로 우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수변 카페의 운영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

-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카페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조직에 관한 사항과 매출액의 처리 및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9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2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임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수변카페 조성으로 마포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이상)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마포구는 노인 복지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바, 이를 통해 카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기금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수익 발생시 기금 적립을 통해 향후 어르신 복지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임.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필 요성과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수변 카페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시 제정 가능한 사항이라 판단됨.
-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따라 조례 제정 후 기금운용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에 타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동행과	권윤영 (8860)	권동희 (885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5조(카페의 관리·운영), 제17조(기금의 재원), 제18조(기금의 용도), 제28조(수당)

#### 2. 비용추계의 전제

- 카페 매출액과 비용은 투자심사의뢰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함
- 비용추계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026년은 운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월분 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카페매출액	437,858	459,751	482,738	506,875	532,219	2,419,441
	소계(a)	437,858	459,751	482,738	506,875	532,219	2,419,441
세출	◦ 운영비	349,911	367,407	385,777	405,066	425,319	1,933,480
	소계(b)	349,911	367,407	385,777	405,066	425,319	1,933,480
□ 총 비용(a-b)	87,947	92,344	96,961	101,809	106,900	485,961	

#### 4. 재원조달 방안

- 기금조성시까지 일반회계를 활용

####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통행과 김은정
연락처	02-3153-8853

## 참고자료

### 1.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2.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2025. 10현재)

노인인구수			마포구 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355,484	17.10%
60,784	25,550	35,234		